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82
----------	-------

발의연월일 : 2026. 4. 16.

발 의 자 : 윤종균·이연희·김주영
서영석·안태준·박용갑
이학영·천준호·문금주
차지호·김병주·남인순
서미화·김우영·한창민
소병훈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에 그 형 또는 일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판결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취업제한 기관으로 명시하면서도 그 대상을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등도 조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관리소장의 경우 전 세대의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입주자 정보를 관리하고 시설관리원의 경우 공동주택 내 합법적 진입이 가능함.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입주자의 개인정보와 독거 여부 등의 생활 형태도 파악할 수 있는 구조적 지위에 있는 반면, 입주자는 직원의 범죄 전력을 알 수 없어 피해 예방 행동이 원천적으로 불가함.

이에 현행법 제56조제1항제10호의 후단을 삭제해 경비업무에만 한정된 취업제한 범위를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공동주택 입주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10호 후단 삭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0호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56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을 종료할 때까지는 제5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56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종료할 때까지는 제5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9의2. (생략)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 26. (생략)

② ~ ⑨ (생략)

-----.

-----.

1. ~ 9의2. (현행과 같음)

10. -----
----- <후단
삭제>

11. ~ 26.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